

식 품 산 업 진 흥 법

2008. 7.



목 차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쪽수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2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 등)		3
	제3조(위원장의 직무)		6
	제4조(회의 등)		
	제5조(간사)		7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8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운영세칙)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9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쪽수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9
	제11조(경비의 지원)		11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12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2조(통계조사의 범위)	13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14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제3조(사업자단체의 운영·감독 등)	15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17
제12조(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			18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19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분야)		22
	제15조(식품명인의 자격 등)	제5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제16조(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제6조(식품명인의 지정신청)	23
		제7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24
		제8조(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	
	제17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제9조(식품명인지정서)	25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쪽수
	제18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제19조(식품명인 식품의 표시 등)	제10조(식품명인의 표시 등)	26
	제20조(식품명인의 기능 전수 등)		
	제21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11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27
	제22조(식품명인에 대한 경비 지원)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16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	제23조(산지가공산업의 지원)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30
제17조(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	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34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제25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제13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공표)	37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6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39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8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제14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40
	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제15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쪽수
제23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제24조(우수식품인증기관 지원 등)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6조(우수식품인증의 사후관리) 제27조(수수료 등)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9조(우수식품인증의 취소)	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42
		제17조(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18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등)	44
		제19조(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45
		제20조(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정기심사)	
		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절차 등)	47
		제22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등)	48
		제23조(유기가공식품 인증서의 발급 등)	49
	제31조(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등)		50
	제32조(인증심사원 자격 등)	제2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52
	제33조(우수식품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제34조(우수식품인증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53
			53
	제35조(우수식품인증의 취소 통보 등)	제26조(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기간)	55
	제27조(수수료)	56	
	제28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56	
		57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쪽수
제30조(승계)		제29조(승계신고)	58
제 5 장 보 칙	제5장 보 칙		
제31조(조세의 감면)			59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제36조(국가인증 제품)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60
	제38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62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63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66
제 6 장 벌 칙			
제36조(벌칙)			66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68
부 칙	부 칙	부 칙	70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 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p>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p> <p>5. “유기가공식품”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p>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합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향상·수급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p>제5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3.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p> <p>4. 식품명인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p> <p>5.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관한 사항</p> <p>6.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p> <p>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심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p> <p>2. 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청·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p> <p>3.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각 1명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p> <p>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p> <p>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p> <p>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p> <p>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p> <p>4.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가.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p> <p>나. 식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p> <p>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p> <p>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4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다.</p> <p>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p> <p>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p> <p>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④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산업 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p> <p>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농림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p>	<p>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p> <p>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p>	<p>·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산업 관련 법인 4. 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5.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식품 관련 학원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p>② 인력양성기관은 식품산업 전문인력</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기술 2. 식품의 품질·영양·위생관리 3. 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p> <p>제11조(경비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자료 개발·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 시설 비용 4. 식품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식품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발에 필요한 사항</p> <p>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p> <p>② 농림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p>		<p>제2조(통계조사의 범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소비·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의 분석·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p>②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최소</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를 가지는 전국 조직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사업자단체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 후에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포함한다)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p>④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p>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p>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사업자단체의 운영·감독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p> <p>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사업</p> <p>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2조(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 등 식품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 등을 일정지역에 집중시키고 식품전문산업단지</p>		<p>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2.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를 조성하는 등의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p> <p>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p> <p>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기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공급 사업 2. 농업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농산물 원료·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세미나·전시회 개최 등 교육·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운송과 관련되는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세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미나·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p> <p>3.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p> <p>4.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p> <p>5.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p> <p>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사업계획서</p> <p>2.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1.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p> <p>2.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p> <p>3. 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① 농림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한 것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p>제15조(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2.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3.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한 자</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 2.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우수성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 보호가치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5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p> <p>제6조(식품명인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p>	<p>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p> <p>3.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호의 분야에만 해당한다)</p> <p>4.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2호의 분야에만 해당한다)</p> <p>5. 사진(3.5cm×4.5cm) 2매</p> <p>제7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도지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1.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또는 우수성</p> <p>2. 유래 및 전승 계보</p> <p>3.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p> <p>4. 사용용기 및 기구</p> <p>5. 제품의 특성</p> <p>6. 분포 실태</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7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p>	<p>7.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p> <p>8.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가치</p> <p>제8조(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소 2. 지정번호 3. 보유기능 4. 제조·조리·가공방법 <p>제9조(식품명인지정서)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의 식품명인지정서</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제18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제19조(식품명인 식품의 표시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제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와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게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를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p> <p>제10조(식품명인의 표시 등) ① 영 제19조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용하는 표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영 제19조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사용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명인 번호 2. 식품명인 지정 분야(품명)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 상황 등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기능전</p>	<p>제20조(식품명인의 기능 전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傳授)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전수받을 자를 정하고, 식품명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 등을 전수·기록·보존을 할 수 있다.</p> <p>제21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식품명인에 대한 경비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p>	<p>3. 식품명인의 성명</p> <p>4. 식품명인 지정기관명</p> <p>제11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정된 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 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3. 기능의 복원·전수를 위한 연구·교육 사업 및 기능 복원·전수시설의 신설·증설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발표회 등 개최 5. 식품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던 식품명인이 사망한 경</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p>우 제20조에서 정한 기능전수자(제15조 제1항의 식품명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경비를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원의 예상효과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p> <p>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농림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세</p>	<p>제23조(산지가공산업의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예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p>	<p>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가공품의 제조·가공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2. 농산물가공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3. 농산물가공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 개발 4.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공동브랜드 및 공동판매망의 개발 6. 전자상거래망의 구축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산지가공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정부수매농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p>	<p>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동의·승인·해제 등을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p>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 예정지의 위치도 1부 3.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1부 4. 공장부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p> <p>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p> <p>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p> <p>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p> <p>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p> <p>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p> <p>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p> <p>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p> <p>1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12.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허가</p> <p>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p> <p>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p> <p>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점도구역의 지정</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7조(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음식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교육·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명인 4.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사업 2.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음식점·식품판매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해외에 있는 음식점의 평가·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국내외 식품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지도할 수 있다.</p> <p>② 농림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p> <p>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①정부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정보 제공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표의 발간 및</p>	<p>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 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특성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식품의 품질관리</p>	<p>제25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식품의 영양 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식품성분표와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으로 각각 작성·공표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나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 성분 분석이나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연구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 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p>	<p>제13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공표) 영 제2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식품성분표 등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기준·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농림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제26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은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인증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 향상·생산 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이하 “품질인증대상품목”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전통식품의 보전·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8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품질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그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 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p> <p>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①</p>	<p>제14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영 제28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식품의 표준규격 제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p>제15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① 영</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p>	<p>제2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p>②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p> <p>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p>	<p>어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품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③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p> <p>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p>	<p>1. 별지 제6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 종합평가서 1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국산 농산물 사용확인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식품 공장심사평가서 1부 4.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 성적서 1부 ⑤ 그 밖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17조(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p> <p>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p> <p>제18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영 제30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제23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 ① 농림부장관은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 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장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p>	<p>1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번호 2. 인증기관명 <p>③ 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p> <p>제19조(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방법·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한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23조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20조(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정기심사)</p> <p>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기심사는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 1회 받아야 한다.</p> <p>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한 우수</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⑤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절차와 기준,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와 선정 기준 및 유기적 취급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유기가공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p> <p>④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유기가공품의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p> <p>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2. 유기취급계획서 1부 3. 원료 및 첨가물이 제2항에서 정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있는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p>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③ 유기가공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 및 시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2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와 선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유기적 취급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와 이를 판매·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농식품의 포장·용기 등에 유기농식품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유기농식품의 인증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3조(유기농식품 인증서의 발급 등)</p> <p>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식품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기농식품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p> <p>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유기농식품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유기농식품 인증서를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p> <p>제24조(유기농식품의 인증 표시 등)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유기농식품 인증의 도형(圖形)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제21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형을 사용하려는 경우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인증번호</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제24조(우수식품인증기관 지원 등) ① 농림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하 “우수식품인증”이라 한다)과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법 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법 제23조에 따른 유기</p>	<p>2. 인증기관명</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가공식품의 인증(이하 “우수식품인증”이라 한다)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p> <p>2. 우수식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2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업무범위별로 각 3명 이상 보유할 것</p> <p>3. 우수식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출 것</p> <p>4.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정하여 고시한다.</p> <p>제32조(인증심사원 자격 등)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임하여야 한다.</p> <p>제33조(우수식품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p> <p>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0조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 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현황 4. 법 제30조 및 이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p>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p>	<p>제2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식품의 인증을 받는 행위 	<p>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4조(우수식품인증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3.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전통식품이나 유기가공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p> <p>4.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p> <p>5.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은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6.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7.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8.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위</p> <p>9.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p> <p>제26조(우수식품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부장관은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식품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을 받은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p>②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p>		<p>제26조(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기간) 법 24조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부장</p>		<p>제27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며,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우수식품인증의 취소) 농림부장관은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p>제35조(우수식품인증의 취소 통보 등) 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8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제30조(승계) ①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장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승계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취급계획서(취급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보 칙</p> <p>제3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 칙</p>	<p>2.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p> <p>3. 승계받은 우수식품인증서 1부</p> <p>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 승계 신고를 받으면 제1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유기농식품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p>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부</p>	<p>제36조(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토록 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농산물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6.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7.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 8. 「식품위생법」 제32조2제3항에 따라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p> <p>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p> <p>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p>제38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법 제16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p>	<p>3.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 식재료 구매 사업 2.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 및 식품 관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관련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중에서 임산물을 단순가공하거나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민예품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6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적합성 조사 등 사후관리 2. 법 제28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품의 표시변경명령 등의 처분 3. 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4.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징수</p> <p>5. 제28조에 따른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개정·폐지 및 그 고시</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연구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2. 식품영양 관련 교육·연구기관 3. 그 밖에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연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제1항의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별 칙</p> <p>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4.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 	<p>한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p> <p>5.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p> <p>6.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한 자</p> <p>2.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계 광고한 자</p> <p>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제3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p> <p>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p> <p>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p>	<p>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은 폐지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p>
<p>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목지정, 전통식품 명인지정 및 특산물등의 품질인증은 이 법에 따라 지정·인증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라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및 전통 외식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명인지정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같은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특산물의 품질인증 및 같은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것은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에 관한 경과</p>	<p>제3조(특산물품질인증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특산물의 품질인증(유기농산물 가공품인증에만 해당한다)을 신청한 것은 이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가</p>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산업”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산업”으로 한다.</p>	<p>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대상품목으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품목은 제2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p> <p>제5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시된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은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목 차

별표 1.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75
-----------------------------	----

[별표 1]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금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횡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2호	경고	50만원	100만원
다.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3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4호	경고	50만원	100만원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목 차

별표 1.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79
별표 2. 전통식품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기준	80
별표 3.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86
별표 4.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87
별표 5.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와 선정기준	88
별표 6. 유기적 취급의 기준	91
별표 7.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92
별표 8. 수수료	93
별표 9.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93

[별표 1]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5조 관련)

1. 지정기준

○ 총점 80점 이상인 자를 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2. 평가방법

항 목	지 정 대 상 (분야)		평가 (평점)
	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명인	
가. 전통성	A.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평가 생략>	30
	B.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25
	C.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20
나. 우수성	<평가 생략>	A.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30
		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자	25

항 목	지 정 대 상 (분야)		평가 (평점)
	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명인	
나. 우수성	<평가 생략>	C.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자	20
다. 정통성	<평가 생략>	A.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B.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5
		C.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자	10
라. 경력 및 활동 사항	<평가 생략>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5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5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5
마. 계승·발전/보호·보존 가치	<평가 생략>	A.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5
		B.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	20
		C.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음.	15

[별표 2]

전통식품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전통식품 공장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심사항목	심사항목 수	배점	평점	판정
가. 공장 입지(立地)	2	6		
나. 작업장	7	21		
다. 제조설비	1	9		
라. 원료 조달 및 관리	3	9		
마. 공정 및 품질 관리	4	15		
바. 용수(用水) 관리	2	7		
사. 개인 위생	2	7		
아. 환경 위생	3	10		
자. 유통 관리	3	9		
차. 포장 및 표시	3	7		
합 계	30	100		
<판정기준> ○ 평가결과의 합계가 70점 이상이면서 제2호의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5개 미만이고 제2호 바목 2)의 평점이 “C”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2.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가. 공장입지	1) 공장 입지는 축산폐수·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 발생시설 등에 의하여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가? A.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없고 쾌적한 경우 B.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은 없으나 주거지역 등의 인접해 있어 쾌적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C.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존재하는 경우	3.0 1.5 0		
	2) 공장에서 원재료·부재료 및 제품의 입고 및 출고는 쉬운가? A. 공장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원재료·부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가 원활한 경우 B. 공장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나 원재료·부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C. 공장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3.0 1.5 0		
나. 작업장	1)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작업장이 용도별(원료처리, 제조가공, 포장 등)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는가? A.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어 교차오염 방지가 효과적일 경우 B.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이 다소 미흡하나 교차오염 방지는 가능한 경우	3.0 1.5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나. 작업장	C.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의 미흡으로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0		
	2) 작업장의 바닥과 벽의 구조와 기능은 적절한가? A. 바닥과 벽이 적절한 구조로 설비되어 있고 배수 등의 기능이 양호한 경우	3.0		
	B. 바닥과 벽이 적절한 구조로 설비되어 있으나 배수 등의 기능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에 미흡한 경우	0		
	3) 작업장 내의 온도를 해당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A.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	3.0		
	B. 적정온도 유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은 충분한가? A. 환기시설이 충분한 경우	3.0		
	B. 환기시설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5) 작업장 출입문과 창문은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가? A.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충분한 경우	3.0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나. 작업장	B.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6) 작업장 출입구에는 수세·세척설비 및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 활용되고 있는가? A. 해당 설비가 잘 갖추어져 활용되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설비의 비치 또는 활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7) 작업장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A.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3.0		
	B.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장 청결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다. 제조설비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적절한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A.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고,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절한 경우	9.0		
	B.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나	4.5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다. 제조설비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C.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의 확보 또는 관리상태가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라. 원료 조달·관리	1) 제품 생산에 사용한 주원료는 조달 방법을 검증할 수 있으며, 전량 국내산으로 조달되었는가? A.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80퍼센트 이상이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3.0		
	B.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5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가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1.5		
	C.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지만, 그 50퍼센트 이상이 상인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	0		
	2)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부재료의 입고 관리가 적절한가? A.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엄선하여 조달하면서 입고 시마다 원료검사를 직접 하거나 그 성적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	3.0		
B.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조달하지만 원료검사 또는 성적서 확인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라. 원료 조달·관리	C. 주원료에 대한 품질기준 확인 또는 입고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0		
	3) 조달된 원료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시설·보관방법 및 입·출고 관리가 적절한가? A.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원료가 적정 환경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입·출고 관리는 선입선출이 준수되고 있는 경우	3.0		
	B. 원료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시설과 보관관리 또는 입·출고 관리 방법이 다소 미흡한 경우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1.5 0		
마. 공정·품질관리	1)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가? A. 제조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고, 주요 공정별로 관리항목을 정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5.0		
	B. 제조작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경험에 의한 공정관리를 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이 다소 미흡한 경우	2.5		
	C. 공정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0		
	2) 최종 제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검사하고 있는가?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마. 공정·품질관리	A.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4.0		
	B. 비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	2.0		
	C. 관련 법규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만을 하고 있는 경우	0		
마. 공정·품질관리	3) 해당 식품 생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험장비를 갖추고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가?			
	A.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과 시험장비를 확보하여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은 확보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인 시험장비를 갖추고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1.5		
마. 공정·품질관리	C. 전문인력이나 기본적인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0		
	4) 최종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 및 입·출고 관리 방법은 적절한가?			
	A. 제품이 적정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제품의 입·출고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3.0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품질관리	B. 해당 제품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조건이나 입·출고 관리가 제품 품질수준 유지에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바. 용수관리	1)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이 오염가능 시설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A.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100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4.0		
	B.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m부터 100m 까지 위치하고 있는 경우	2.0		
바. 용수관리	C.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0		
	2)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A. 관련 법규에 따라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먹는 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3.0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바. 용수관리	B.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검사결과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0		
사. 개인위생	1) 관련 법규에 따른 종업원의 건강검진 및 검진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A. 전체 종업원(영업자를 포함한다)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결과도 양호한 경우	3.0		
	B. 건강진단대상자 전원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결과도 양호한 경우	1.5		
	C. 건강진단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않은 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인정된 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0		
	2) 종업원은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의 위생장구와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A.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적절하게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 경우	4.0		
	B. 위생 장구류는 착용하고 있으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	2.0		
C.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0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아. 환경위생	1)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처리방법 과 처리시설의 운영은 적절한가? A. 적정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는 경우	3.0		
	B. 적정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처리시설의 운영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1.5		
	C. 공장 발생 오·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0		
	2)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상태는 적절한가? A.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적정하고 처리상태가 위생적인 경우	3.0		
	B.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3) 화장실의 구조, 위생장비 설치와 관리상태가 적절한가? A. 수세식 화장실로서 위생장구를 적절하게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4.0		
	B.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위생장구의 확보 및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2.0		
	C.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거나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자. 유통관리	1) 해당 제품의 품질이 최종소비 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장비와 합리적인 유통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A. 적절한 유통장비와 합리적인 유통방법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최종소비 시점까지 해당 제품의 품질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		
	B. 유통장비 및 유통방법이 다소 미흡하여 최종소비 시점 이전에 해당 제품이 경미한 품질 변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2) 공장심사 이전 1년 동안 인증신청 제품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A.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3.0		
	B.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건 이하인 경우	1.5		
	C.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2건 이상인 경우	0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자. 유통관리	3)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로부터 반품되거나 소비자의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경우	0		
차. 포장 및 표시	1) 해당 제품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A.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3.0		
	B.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가 식품 포장용으로는 적합하나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에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차. 포장 및 표시	2) 포장재의 보관 및 입·출고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A.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보관상태가 양호하며, 입·출고 관리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2.0		
	B. 보관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보관상태도 양호하나 입·출고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우	1.0		
	C. “B”에 미흡한 경우	0		
	3) 신청 품목에 대한 광고·선전 등의 홍보 및 제품에 대한 표시 내용이 적절한가?			
	A.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 맞으며, 오해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2.0		
B.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는 맞지만, 다소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1.0			
C. “B”에 미흡한 경우	0			

[별표 3]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제18조제1항 관련)

1. 표지 도표



2. 도표제작 방법

- 가. 크기: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한다.
- 나. 문자: 첫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끝부분이 도형의 양쪽 끝의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배열한다.
- 다. 색 깔
 - 1) 물레방아, 산 및 4개의 곡선: 어두운 노랑색(C40+ M45+ Y100)으로 한다.
 - 2) 12개의 원점: 윗줄의 첫째·셋째·넷째점, 중간줄의 둘째·넷째점, 밑줄의 첫째·둘째·셋째점은 어두운 노랑색(C40+ M45+ Y100)으로, 윗줄의 둘째점, 중간줄의 첫째·셋째점, 밑줄의 넷째점은 주홍색(M90+ Y95)으로 한다.
 - 3) 한글 및 영문표기: 어두운 연두색(C75+ M59+ Y95)으로 한다.
 - 4) 위의 기본 색깔이 제품·포장·용기 등과 조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별표 4]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가공기준

구 분	기 준
가. 일반요건	1) 유기사업자는 유기식품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유기사업자는 유기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 유기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유기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공원료	1)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첨가물, 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 되거나 취급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량비율에 관계 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 원료를 혼합할 수 없다. 3)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래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구 분	기 준
나. 가공원료	4) 물과 소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유기 성분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다만, 먹는 물 및 식품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5) 미생물 제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전자변형 미생물에서 유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6) 별표 5의 유기적 취급에 허용하는 물질을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공방법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 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2) 유기식품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다. 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식품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5) 저장할 때에 공기, 온도, 습도 등 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며, 건조하여 저장할 수 있다.
<p>※ 유기원료 비율의 계산법[나목 2) 관련]</p> (1) 유기원료의 비율 계산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에 투입된 모든 원료의 중량, 첨가물의 중량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세척, 절단 등 제품생산 전에 버려지는 비가식 부분의 중량과 포장재, 용기 등의 중량은 제외한다.	

- (2) 원료 및 첨가물 중량의 계측 시점은 해당 원료가 가공 공정에 투입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3) 가공보조제 등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는 것은 그 중량은 제외한다.
- (4) 유기원료의 비율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의 중량에 대한 유기원료 중량의 비율과 같다.

$$\frac{I_o}{G-WS} = \frac{I_o}{I_o+I_c+I_a} \geq 0.95$$

G: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G=I_o+I_c+I_a+WS$)

I_o : 유기원료[유기농(축)산물+유기가공식품]의 중량

I_c : 비유기 원료(유기인증 표시가 없는 원료)의 중량

I_a : 비유기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제외)의 중량

WS: 물과 소금의 중량

[별표 5]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와
선정기준(제22조제2항 관련)

1.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

명칭(한)	명칭(영)	INS	첨가물	조 건	가공 보조제	조 건
개암껍질	Hazelnut shells	-	-	-	○	-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	-	-	○	-
구아검	Guar gum	412	○	-	-	-
구연산	Citric acid	330	○	과일 및 채소 제품	○	pH조절
구연산나트륨	Sodium citrate	331 (i)	○	소시지, 난백의 저온살균, 유제품	-	-
구연산칼륨	Potassium citrate	332	○	-	-	-
구연산칼슘	Calcium citrate	333	○	-	-	-
규조토	Diatomaceous earth	-	-	-	○	감미료 및 포도주용, 여과보조제
글루코노델타 락톤	Glucono delta- lactone	575	○	D-글루코오스를 브로민수로 산화시켜 생산한 것은 금지	-	-
글리세롤	Glycerol	-	○	식물 추출물	-	-
글리세리드	Glycerides (mono/di)	-	-	-	○	식품의 드럼건조용에 한함
글리세린	Glycerin	422	○	지방과 기름의 가수분해로 생산된 것	-	-
나무껍질성분 제제	Preparation of bark components	-	-	-	○	설탕용으로
나무수지	Wood resin	-	-	-	○	-

명칭(한)	명칭(영)	INS	첨가물	조 건	가공 보조제	조 건
나뭇재	Wood ash	-	○	전통치즈	-	-
난백알부민	Egg white albumin	-	-	-	○	포도주용으로
레시틴	Lecithin	322	○	표백제 및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얻은 것	○	-
로커스트빈검	Locust bean gum	410	○	유제품, 육제품	-	-
밀랍	Beeswax	901	-	-	○	이형제
백도토	Kaolin	559	-	-	○	-
벤토나이트	Bentonite	559	-	-	○	과일 및 채소제품
사과산	Malic acid	296	○	-	-	-
산소	Oxygen	948	○	-	○	-
산탄검	Xanthan gum	415	○	지방제품, 과일 및 채소, 케이크, 비스킷, 샐러드	-	-
색소	Colors	-	○	식물 추출물, 비합성	-	-
셀룰로오즈	Cellulose	-	-	-	○	재생포장, 고결방지제(염소표백되지 않은 것), 여과보조제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524	○	곡류제품	○	설탕 생산 중 pH조절, 설탕 가공 및 전통 제빵 제품의 표면 처리용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	-	-	○	설탕 가공을 위한 pH조정, 개별 급속냉동시 복숭아 제피공정 외 과채류 제피공정에는 사용 금지
수산화칼슘	Calcium hydroxide	526	○	옥수수빵	○	설탕 가공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Magnesium stearate	-	○	-	-	-
식물성기름	Vegetable oils	-	-	-	○	유연제 또는 이형제
쌀가루	Rice meal	-	-	-	○	-

명칭(한)	명칭(영)	INS	첨가물	조 건	가공 보조제	조 건
아라비아검	Arabic gum	414	○	우유, 지방 및 과자류 제품	-	-
아르곤	Argon	938	○	-	-	-
아스코르브산	Ascorbic acid	300		자연 형태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알긴산	Alginic acid	400	○	-	-	-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401	○	-	-	-
알긴산칼륨	Potassium alginate	402	○	-	-	-
에탄올	Ethanol	-	-	-	○	용매
염화마그네슘	Magnesium chloride	511	○	대두제품	○	응고제
염화칼륨	Potassium chloride	508	○	냉동 과일 및 채소, 통조림 과일 및 채소, 채소소스류, 케첩 및 겨자	-	-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509	○	유제품/지방제품/과일 및 채소/대두제품	○	응고제
오존	Ozone	-	-	-	○	-
옥수수녹말	Cornstarch	-	○	-	-	-
요오드칼륨	Potassium iodide	-	○	-	-	-
우유배양균	Dairy culture	-	○	-	-	-
운모	Isinglass	-	-	-	○	-
이산화규소	Silicon dioxide	551	○	허브와 향신료의 고결방지제	○	겔 또는 콜로이드 용액으로, 포도주, 과일 및 채소가공
이산화염소	Chlorine dioxide	-	-	-	○	식품접촉면의 소독 및 살균용, 단 수중 잔류 염소량이 먹는 물 기준치 이내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290	○	-	○	-
이산화황	Sulfur dioxide	220	○	포도주용	-	-
이소프로판올	Isopropanol	-	-	-	○	설탕 제조시 결정화 공정

명칭(한)	명칭(영)	INS	첨가물	조 건	가공 보조제	조 건
인산	Phosphoric acid		-	-	○	식품접촉면 및 장비세척에 한함
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	○	유제품	-	-
인산암모늄	Ammonium phosphate	342	○	포도주용으로만, 리터당 0.3mg으로 제한	-	-
인산칼륨	Potassium phosphate	-	○	-	-	-
젖산	Lactic acid	270	○	발효채소제품	○	유제품 응고제, 치즈 생산용 염수 pH조절
제1인산칼슘	Calcium phosphate, monobasic		○	밀가루 팽창제	-	-
제2인산칼슘	Calcium phosphate, dibasic	-	○		-	-
제3인산칼슘	Calcium phosphate, tribasic	-	○	-	-	-
젤라틴	Gelatin	-	-	-	○	포도주, 과일 및 채소 가공
주석산	Tartaric acid	334	○	포도주용	○	포도주용
주석산나트륨	Sodium tartrate	335	○	케이크/과자류	○	-
주석산수소칼륨	Potassium bitartrate	-	○	곡류, 과자류 제품	○	-
주석산칼륨	Potassium tartrate	336	○	곡물류/케이크/과자류	○	-
질소	Nitrogen	941	○	-	○	-
카나우바왁스	Carnauba wax	903	-	-	○	이형제
카라기난	Carrageenan	407	○	유제품	-	-
카라야검	Karaya gum	416	○	-	-	-
카세인	Casein	-	-	-	○	포도주용
캐롭빈검	Carob bean gum	-	○	-	-	-
켈프	Kelp	-	○	농축제 및 식이 첨가물로만 사용	-	-

명칭(한)	명칭(영)	INS	첨가물	조 건	가공 보조제	조 건
탄닌산	Tannic acid	184	-	-	○	포도주 여과보조제
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500	○	케이크 및 비스킷, 과자류	○	설탕 생산
탄산마그네슘	Magnesium carbonate	504	○	-	-	-
탄산수소나트륨	Sodium bicarbonate	-	○	팽창제	-	-
탄산암모늄	Ammonium carbonate	503	○	곡물제품, 과자류, 케이크 및 비스킷류	-	-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501	○	곡물류, 케이크 및 비스킷	○	포도 건조에 사용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	170	○	착색을 제외한 모든 기능, 비합성품	○	-
토코페롤	Tocopherol	306	○	지방과 오일의 항산화제	-	-
트래거캔스검	Tragacanth gum	413	○	-	-	-
펄라이트	Perlite	-	-	-	○	여과보조제
펙틴	Pectin	440	○	유제품	-	-
한천(寒天)	Agar	406	○	비합성품	-	-
활석	Talc	553	-	-	○	-
활성탄	Activated carbon	-	-	-	○	-
황산	Sulfuric acid	513	-	-	○	설탕용 추출수 pH조절
황산마그네슘	Magnesium sulfate	-	○	비합성원료에 한함	-	-
황산암모늄	Ammonium sulfate	517	○	포도주용으로만, 리터당 0.3mg 이내	-	-
황산 제1철	Ferrous sulfate	-	○	철분 강화제	-	-
황산칼슘	Calcium sulphate	516	○	케이크 및 비스킷, 대두제품, 제빵	○	응고제
효모	Yeast	-	-	-	○	비합성, 석유화학계 배양액 및 황산 폐기물 증류액을 사용한 것 금지

2.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선정기준

가. 유기적 취급을 허용하는 물질은 유기농업의 원칙 및 예방 원칙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이해관계자가 물질의 평가를 심의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나.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할 것
- 2) 자연적, 생물적,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할 것
- 3) 환경에 대하여 지속 가능할 것
- 4) 인간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증진할 것
- 5) 생산물의 품질 개선 및 보존에 유익할 것
- 6) 광범위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것
- 7)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합성물질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별표 6]

유기적 취급의 기준(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가. 해충 및 병원균 관리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화학적인 방법과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2) 해충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 허용된 살충 물질 등을 차례로 적용하여야 한다. 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금지된 물질 및 방법으로 부터 유기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 및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세척 및 소독	1) 유기식품은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식품을 유기재배 및 취급에 금지된 물질,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먹는 물 및 물질목록에 허용된 가공보조제를 식품 표면의 세척제 및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포장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식품과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유기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기 준
다. 포장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포함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 4) 유기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과 접촉한 재활용된 자재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라. 원료 및 제품의 수송	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제품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송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금지된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3) 수송과정에서 유기식품이 유기식품이 아닌 물질이나 금지된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마. 기록 및 접근 보장	1)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취급 전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최소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가공과 유통의 유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유기취급계획을 인증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원료, 첨가물, 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투입 자재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가공, 포장, 저장, 운송, 판매, 그 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 지침을 문서로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5)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이 파견한 심사원에게 유기식품의 취급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별표 7]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25조 관련)

1. 공통기준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가. 품질관리에 관한 박사학위(외국에서 받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품질관리기술사 또는 인증심사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또는 인증심사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농학, 식품 관련분야, 품질관리 관련분야 또는 인증심사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에서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외국에서 받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2. 개별기준

인증분야별로 해당 분야 인증심사와 관련된 교육과정(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8]

수 수 료(제27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1. 기본 수수료	○ 인건비·사무실운영비·감가상각비 등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2.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2일(각 인증기준에 의한 심사항목의 과반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3. 인증심사원 수당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 수당 산정 기간은 2일(심사항목의 과반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로 하고, 수당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
4. 제품시험 수수료	○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시험기관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 및 감정 수수료를 적용한다.
5. 시료 운반·조작비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비 고>

- 1)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2) 시험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를 인증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해당 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3) 공장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공장의 규모 및 품목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일의 범위에서 공장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9]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사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일과 그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가 아래와 같은 때	법 제28조 제1항			
가. 우수식품 인증기준에 위반된 때		표시사용정지 1개월	표시사용정지 3개월	표시사용정지 6개월
나. 우수식품 표시방법에 위반된 때		표시 변경 명령	표시사용정지 3개월	표시사용정지 6개월
다. 해당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판매정지 1개월	판매정지 3개월	판매정지 6개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목 차

별지 1.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97
별지 2.	식품명인지정서	98
별지 3.	식품명인 활동상황 보고서	98
별지 4.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99
별지 5.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100
별지 6.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01
별지 7.	국산 농산물 사용확인서	101
별지 8.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102
별지 9.	시험성적서	102
별지 10.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103
별지 11.	유기가공식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103
별지 12.	유기가공식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104
별지 13.	유기가공식품 인증신청서	105
별지 14.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106
별지 15.	우수식품인증 승계신고서	107

[별지 제4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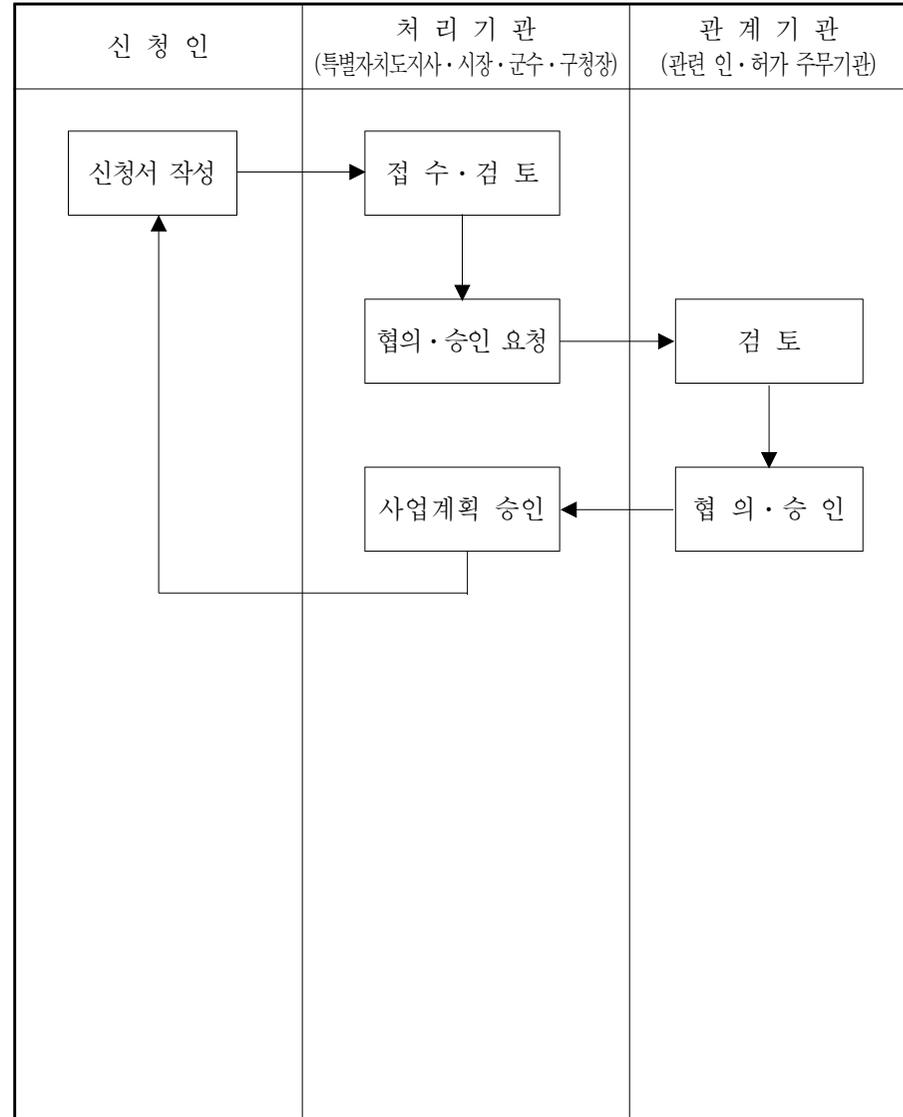
(앞쪽)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직업							
	주소									전화		
사업계획	사업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예정지											
	시설규모	부지	㎡		건물	㎡		설비	종			
	재원조달 (백만원)	계	정부보조	정부융자	금융기관 차입	자부담						
	사업형태		구성원 내용									
<p>「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산지가공품 생산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구비서류 ></p> <p>1. 사업계획서 1부</p> <p>2. 공장 예정지의 위치도 1부</p> <p>3.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1부</p> <p>4. 공장부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업 체 명:

심 사 항 목 명	심사항목수	배 점	평 점	판 정
1. 공장입지	2	6		
2. 작 업 장	7	21		
3. 제조설비	1	9		
4. 원료 조달·관리	3	9		
5. 공정·품질 관리	4	15		
6. 용수관리	2	7		
7. 개인위생	2	7		
8. 환경위생	3	10		
9. 유통관리	3	9		
10. 포장 및 표시	3	7		
합 계	30	100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의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함.

[별지 제9호서식]

시 험 성 적 서

규격번호 및 규격명:
(시료번호:) 종류·등급 또는 호칭:

시험항목	기 준 치	시 험 결 과(시료번호)								합격판정
		1	2	3	4	5	6	7	8	
적 용 시험기준										
주) 1. 시험항목 및 기준치는 해당 우수식품 인증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적는다. 2. 시험 결과는 시료번호별로 실제 시험결과를 기재하며, “합격판정”란에는 불합격된 시험 항목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10호서식]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1. 인 증 번 호 :
2. 제 조 업 체 명 :
3. 대 표 자 명 :
4. 공 장 소 재 지 :
5. 인 증 규 격 번 호 :
6. 품 목 명 및 인 증 내 용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심사기준에 맞으므로 위와 같이 전통식품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장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1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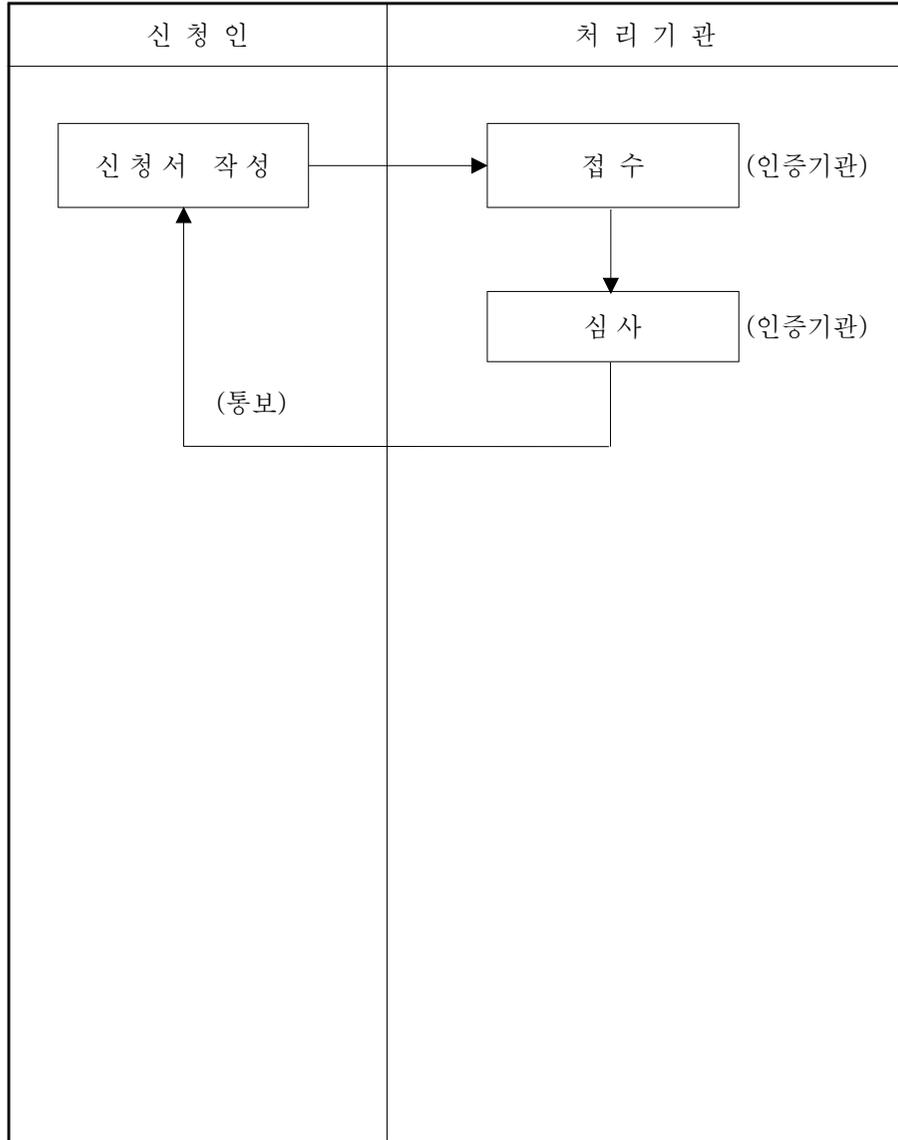
(앞쪽)

유기가공식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5일
신 청 인	①업체(조직)명		② 종 업 원 수	
	③ 대 표 자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⑥연락처	
⑦ 연 장 신 청 품 목	⑧주원료	⑨제품생산개시 연월일	⑩연간생산능력	
⑪ 인 증 번 호		인증받은 연월일		
⑫유효기간 연장기간				
⑬유효기간 연장사유				
<p>「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인증기관장 귀하</p>				
수 수 료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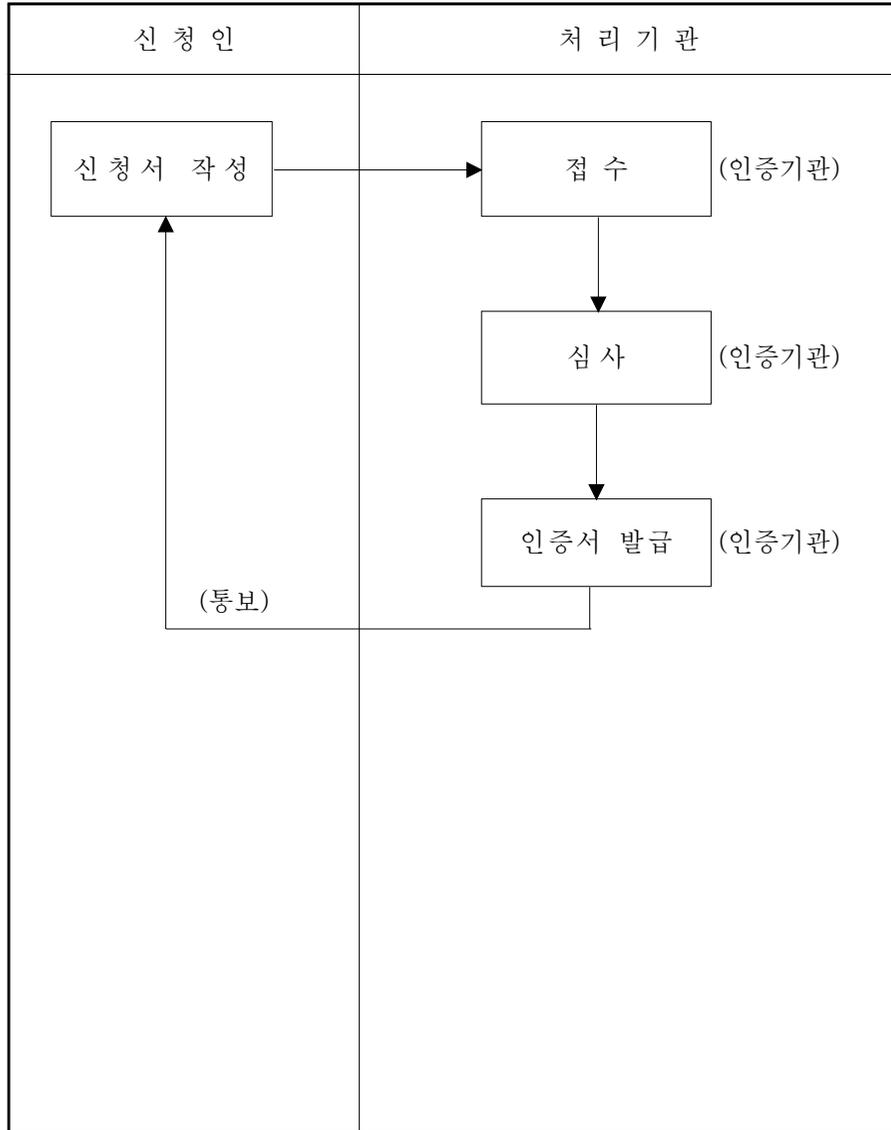
(앞쪽)

유기가공식품 인증신청서				처리기간
				3월
신 청 인	①업체(조직)명		②종업원 수	
	③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연락처	
⑦신청품목	⑧주원료	⑨제품생산 개시연도	⑩연간생산능력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1.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2. 유기취급계획서 1부 3. 원료 및 첨가물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로 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1. 인증번호:
2. 유효기간:
3. 업 체 명:
4. 대 표 자:
5. 주 소:
6. 품 목 명: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장

인

